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1-80호

「항만법 」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항만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·공고합니다.

2021년 07월 19일
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

출입통제구역 지정・공고

1. 지정대상

○ 울산신항 남방파제(1-1단계) 항 외측 소파블록 구역(14,500㎡)

※ (붙임) 출입통제구역의 위치 및 위치도

2. 지정사유

○ 동 구역은 낚시객에 의한 안전사고(실족에 의한 추락 등)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인명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함

3. 지정일 : 2021. 8. 20.

4. 출입통제 기간 : 2021. 8. 20. ~ 지정 해제시까지

※ 계도기간 : 2021. 8. 20. ~ 2021. 9. 19.(1개월)

5. 위반시 벌칙에 관한 사항

○ 근거 :「항만법」제113조 제2항

○ 벌칙 :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

부 칙

이 지정・공고는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붙 임.

1. 출입통제구역 위치 및 위치도

○ 위치 : 울산신항 남방파제(1-1단계) 항 외측 소파블록 구역(14,500㎡)

*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260-2번지 전면해상(범위 : ─── 선 이내 구역)

○ 위치도

